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63 호 2026. 5. 28.(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5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6호[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4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3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4호[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변경] 결정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5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19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26-3)].....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26-4~6)].....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1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36)].....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2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37)]..... 1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21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33)].....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2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37호[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40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화재감시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42호[「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43호[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43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17호[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고]..... 4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최 수 미 (인)
권한대행 부구청장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65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울산광역시 복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월은 1월, 4월, 7월 및 10월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월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함께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구 누리집에 게시한다.

제4조의 제목 “(배부와 비치)”를 “(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3.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4. 출향인사, 관내·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의 관련인

② 구보는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3·6·9·12월 말에 발행하던 구보 발행월을 1·4·7·10월로 조정하여 연 말·연초 발생하는 구정소식을 빠짐없이 신고,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보 발행월 변경 및 게시처 명확화(제2조)

- (현행) 매월 말 또는 분기 마지막 달 말 경에 발행,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

⇒ (개정)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1·4·7·10월) 발행, 구 누리집에 게시

나. 구보의 배부대상 명시(제4조)

다. 구보의 소식제공 조항 삭제(제5조)

울산광역시 복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최 수 미 (인)
권한대행 부구청장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666호

울산광역시 복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
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모범공무원 규정」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제5조)
 -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1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호계동 986-13	당수골2길 40	2026. 5. 27.	2026. 5. 28.	2017. 5. 4.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무룡동 772	사등곡길 4	2026. 5. 27.	2026. 5. 28.	2004. 8. 9.	옛 지명인 사등곡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상안동 882	농서로 159	2026. 5. 27.	2026. 5. 28.	2009. 4. 9.	옛 지명인 농서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14호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내지 3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고 시 명 :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2. 고시내용 :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적용 사항 및 기타물건 기준가격 신규[변경] 사항
 - (1)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적용지수(용도, 층), 가감산율
 - (2) 오피스텔 외 건축물
 -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나.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다.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율
 - 라.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마. 구분지상권 시가표준액 산정 요령
 - (3) 기타물건 기준가격 신규 및 변경사항
 - 가. 차량,기계장비 : 신규 23건, 선박 : 변경 12건, 항공기 : 신규 6건
 - 나. 에너지공급시설 : 신규 30건
 - 다. 기타(시설물, 회원권) : 신규(변경,삭제) 75건
 - (4)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붙임 별책” 참고
 - ※ 붙임 별책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조사, 산정 업무요령” 및 “2026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재고시 목록”은 복구청 세무1과 (전화 : 052-241-7541)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기간	점용목적
	성 명	주 소				
제2021 -03호	김 말 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252-3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252-3번지	8.9	'21. 04. 02. ~ '30. 04. 01.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및 집수정 설치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기간	점용목적
	성명	주소				
제2021 -04호	정명숙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252-3번지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252-3번지	7.5	'21. 05. 11. ~ '30. 05. 10.	횃집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기간	점용목적
	성명	주소				
제2022 -01호	김현섭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105동 14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7-4번지	3.2	'22. 04. 03. ~ '30. 05. 31.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매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기간	점용목적
	성 명	주 소				
제2022 -04호	김 임 분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08번지 5-6	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722	5	'22. 05. 08. ~ '30. 05. 31.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매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1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6. 5. 28.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작
3. 점용·사용의 장소 : 어물동 1240-182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257㎡
나. 기 간 : 2025. 6. 1. ~ 2030.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성철
나. 주 소 : 울산 복구 강동산하2로 43, 108동 3202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사항

피허가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용 목적	점용장소	점용면 적	변경사항		변경 사유
성명	주소						당초	변경	
(주)경동 도시가스 박○수	북구 염포로 ****	제2026-4호 (변경허가)	2026.5.28.	도시가스 배관매설	무룡동 935-24 외 2필지 (무룡동700-1, 700-3)	3.36㎡	2022.09.14. ~ 2026.05.31.	2026.06.01. ~ 2031.05.31.	기간 연장
(주)경동 도시가스 박○수	북구 염포로 ****	제2026-5호 (변경허가)	2026.5.28.	도시가스 배관매설	신현동 958-25 외 1필지 (신현동 958-26)	6.55㎡	2022.10.16. ~ 2026.02.31.	2026.06.01. ~ 2031.05.31.	기간 연장
(주)경동 도시가스 박○수	북구 염포로 ****	제2026-6호 (변경허가)	2026.5.28.	도시가스 배관매설	신현동 958-24 외 2필지 (신현동 958-56, 달천동 892-25)	9.24㎡	2022.12.19. ~ 2026.05.31.	2026.06.01. ~ 2031.05.31.	기간 연장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1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김**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박상진2로 **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6. 7. 11.(토) 16:00 ~ 19: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체육회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20, 2층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82-2번지	하 천 명 칭	○ 동천
점 용 내 용	○ 2026 복구청장배 건강마라톤대회	점 용 면 적	○ 3,434.41㎡
점 용 기 간	○ 2026. 10. 25.(일) 07:00 ~ 14: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5 - 721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나아리)		
점용 위치	○ 복구 신현동 85-2번지 일원	노선명	○ 31호선(무릉로)
점용 목적	○ 용수관로 이설공사	점용 면적	○ L =20.0m ○ A(일시) = 12.84m ² ○ A(계속) = 70.0m ²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8.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법인명	대표자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	처분내용
(주)제○와○에○	정**	2021-남구-임대사업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3번길 61, 7*2호	과태료 5,210,000원 (가산금 포함)

5.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67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052-241-8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37호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조치명령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행정처분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5. 27.~ 2026. 6. 1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공시대상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처분	반송일자	반송사유
진*현	울산 중구 난곡11길 5 ***호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폐기물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2026.5.19.	보관기간 초과 반송
이*자	경주시 외동읍 모화남2길**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폐기물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2026.5.22.	보관기간 초과 반송

5. 의견제출부서 : 울산광역시 복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21~3, FAX:052-241-7809)
6. 의견제출기한 : 2026. 6. 11.까지
 -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40호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사항 규정 및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5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 근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및 공모 절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회계감사인 선임 확정 및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2)241-7113,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chan8301@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경제문화국장, 공단 총괄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경영·회계·재무·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절차)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7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가 공단이 책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건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 평균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감사인의 자격) ① 회계감사인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회계감사계약)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단이 회계감사계약 해지 및 회계감사인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9조제2항 관련)

- 산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
 - ※ 참석위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 점수 제외하지 않음
- 제외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감사 수행 능력 (35)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감사 수행 계획 (65)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합 계		100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3-3 회계감사 계약

가. (근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규정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 준용

나. 지방공기업은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42호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사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 비대면 서면 심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면회의 원칙 및 원거리 위원의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 범위의 다양화 (안 제4조제1항)

- 연령·계층·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기준 정비

나. 수의계약 참여 예외규정(단서) 삭제 (안 제6조)

- 위원의 직무 관련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 참여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이해충돌 방지 강화

다. 대면회의 원칙 수립 및 서면심의 요건 구체화 (안 제7조제2항)

- 대면회의 원칙의 근거 마련 및 예외적 서면심의 사유 명시
- 라. 원거리 거주 위원의 실비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1조)

- 원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마.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예산실
- 2) 전화번호 : 052)241-7106,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dbwls4020@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선정함에 있어”를 “선정할 때”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을 “하고, 연령과 계층·직능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 ② 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하여야”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

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비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u>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 자격 ·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u>위촉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1. ~ 5. (생 략)</p> <p>③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u>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선정할 때</u> ----- ----- ----- ----- <u>하고, 연령과 계층 · 직능</u> ----- ----- <u>별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u> ----- ----- ----- ----- <u>노력해야 한다.</u> -----</p> <p>② <u>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③ ----- ----- ----- ----- <u>위촉해야</u> ----- . ----- ----- ----- <u>그렇지 않다.</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 ----- ----- <u>않을</u> ----- ----- . -----</p> <p>⑤ -----</p>

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삭제
2. ~ 6. (생략)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늦

 --- 해야 ----- . -----

 ----- 위촉
해야 -----

 ----- 그렇지 않
다.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해제해야
 ----- .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

 ----- . <단
서 삭제>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② (생략)

<신 설>

----- 조치해야 -----.

③ -----

----- 검토해야 -----.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도록 -----

----- 노력해야 -----.

제11조(수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비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8급 정유진(241-7106)

현행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2.3.31.>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

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2.3.31.>

② 구청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74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상점가명 : 매곡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
2. 지정구역

등록번호	골목형 상점가명	업무구역	규모		지정일자
			면적(m ²)	점포수(개)	
2026-19	매곡시장 골목형상점가	매곡1로 4-1, 4-3, 4-4, 4-7, 4-18, 4-20 신기2길23,27,30-1 신기3길19-19	2,770.5	40	
2026-20	송정화봉라인 골목형상점가	박상진2로 124 화산5길 5,7,9 화산6길 2,3,4,8 화산8길 1,6,7 화산9길 1,5,6,7,8	4,649.4	47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277)로 연락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 공고 제2026 - 17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고시) 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의회의장

□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의원			손옥선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손옥선	현대차	45	매각	8,550	2025-05-02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30	매각	5,700	2025-05-02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20	매각	3,888	2025-05-19	현대차증권
배우자	현대차	10	매각	1,857	2025-06-09	현대차증권
배우자	현대차	25	매각	211	2025-08-06	현대차증권
배우자	현대차	125	매각	42,875	2026-01-09	현대차증권

끝.